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연월일 : '96. 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출사유

- '96.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도분 시세(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함.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 주요내용

-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직계가족에게 주민세(균등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토지분),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면제

□ 시세 과세면제 내역

- ① 인명피해(사망 및 2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 면제, 사망피해 가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토지분) 과세면제
- ②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입은 자(그 건축물의 세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면제, 그 건축물이 유실·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도시계획세(토지분) 과세면제.

- ③ 농경지(전·답)에 침·관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 과세면제, 유실·매몰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와 당해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 ④ 가축의 폐사·유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 과세면제,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000수 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유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 ⑤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인해 건축물이 파손(반파 이상)된 당해 사업장에 대한 '96. 7월분부터 '96. 12월분까지의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면제.
- ⑥ 어선·어망·어구 등이 유실·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 과세면제
- ⑦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유실·파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세(균등할) 과세면제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지방세법

○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2조 (정의)

제1호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제176조 (세율)

제1호 개인

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구 분	세 액
인구 50만 이상의 시	4,5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3,000원
기 타 시	1,800원
군	1,000원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제2호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 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 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 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 000원
기타 법인		50, 000원

○ 제175조 (납세지 등)

제1항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를, 법인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 제234조의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 제234조의10 (납세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제1항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 제234조의16 (세율)

제1항 종합합산세액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 억원 초과 3 억원 이하	38만원 + 1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178만원 + 3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378만원 + 5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1,128만원 + 10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5,128만원 + 30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 억원 초과	11,128만원 + 50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제2항 별도합산세액

과 세 표 준	세 율
1 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30만원 + 1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90만원 + 5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440만원 + 10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1,640만원 + 30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3,240만원 + 50 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 억원 초과 300 억원 이하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3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 억원 초과	6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제3항 분리과세대상토지

구 분	세 율
1.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 · 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제237조 (세율)

제1항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 제243조 (정의)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 제246조 (납세지)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제247조 (과세표준)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급여의 총액

○ 제248조 (세율)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제2항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조의 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제1항 법 제9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준용법령

○ 농지법 제2조 (정의)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과세면제 사례 준용

○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도세과세면제 ('95.9.1 경기도의회 의결)

- 사고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과세면제

○ 호우피해에대한도세과세면제 ('95.10.20 경기도의회 의결)

- 호우피해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과세면제

- 호우피해로 인하여 면허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세 과세면제